



의안번호	제 2017 - 25 호
보 고 연 월 일	2017. 12. 4. (제83차 정기회의)

보
고
안
건

전문위원 업무보고

제 출 자	수석전문위원
-------	--------



목 차

I. 제112차 전체회의	1
1. 일시 · 장소	1
2. 참석자(10명)	1
3. 주요 안건	1
II. 제113차 전체회의	1
1. 일시 · 장소	1
2. 참석자(8명)	1
3. 주요 안건	2
III. 상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형량범위] 논의 결과	2
1. 대유형1[일반적인 상해]	2
가. 제1유형(일반상해)	2
나. 제2유형(중상해)[의견일치] ⇨ 가중영역 상한 수정	5
다.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견일치] ⇨ 현행 유지	5
라.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의견일치] ⇨ 현행 유지	5
마. 형량범위(안)	6
2. 대유형2[특수상해 · 누범상해]	6
가. 제1유형(특수상해)[의견일치]	6
나. 제2유형(특수중상해 · 누범상해)[의견일치]	7
다. 제3유형(누범특수상해)[의견일치]	8
라. 형량범위(안)[의견일치]	8
IV. 폭행범죄 양형기준 수정안[형량범위] 논의 결과	8
1. 제1유형(일반폭행)	8
2. 제2유형(폭행치상)	10

3.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견일치] ⇨ 현행 유지	12
4.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의견일치] ⇨ 현행 유지	12
5. 제5유형(운전자 폭행치사)[의견일치] ⇨ 현행 유지	12
6. 제6유형(누범 · 특수폭행)	13
7.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15
8. 형량범위(안)	16
V. 협박범죄 양형기준 수정안[형량범위] 논의 결과	17
1. 제1유형(일반협박)	17
2. 제2유형(운전자 협박치상), 제3유형(운전자 협박치사)[의견일치] ⇨ 현행 유지	18
3. 제4유형(누범 · 특수협박)	18
4.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20
5. 형량범위(안)	20
VI. 폭력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양형인자] 논의 결과	21
1. 의견일치	21
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로 수정	21
나. 대유형1[일반적인 상해] 양형인자 중 (다만 2.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 상습상해 삭제 후 ‘(다만 2. 누범상해 · 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로 수정	21
다. 상습범인 경우 ⇨ 추가	21
라. 대유형2[특수상해 · 누범상해] 양형인자 중 ‘중한 상해’ ⇨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로 수정	22
2. 의견불일치	22
가.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22
나. 진지한 반성	23

다. 미필적 고의로 상해(폭행, 협박)행위를 저지른 경우	24
VII. 향후 일정	25

【별첨】

- 구민경, “폭력범죄 중 상해 양형기준 수정 검토2”
- 구민경, “폭력범죄 중 폭행 양형기준 수정 검토2”
- 구민경, “폭력범죄 중 협박 양형기준 수정 검토2”
- 구민경, “양형인자 추가 검토”
- 이용, 김도연, “폭력범죄 양형기준 수정”

<참고자료>

- 2015.11.13. 워크숍 자료, “형량범위 중첩”
- 2015.10.23. 워크숍 자료, “형량범위 세 영역간 중첩 관련 검토”



I. 제112차 전체회의

1. 일시 · 장소

- 일시 : 2017. 11. 13.(월) 16:00 ~ 18:3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2. 참석자(10명)

- 수석전문위원, 강수진, 구민경, 김혜경, 김도연, 박수정, 이용, 이진국, 전휴재, 한상규 전문위원
- 운영지원단장(간사)

3. 주요 안건

- 폭력범죄(상해) 양형기준 수정안[형량범위] 검토

II. 제113차 전체회의

1. 일시 · 장소

- 일시 : 2017. 11. 20.(월) 15:00 ~ 21:1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2. 참석자(8명)

- 수석전문위원, 구민경, 김혜경, 김도연, 박수정, 이용, 전휴재, 한상규 전문위원
- 운영지원단장(간사)

3. 주요 안건

- 폭력범죄(폭행, 협박) 양형기준 수정안[형량범위] 및 폭력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양형인자] 검토

III. 상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형량범위] 논의 결과

1. 대유형1[일반적인 상해]

가. 제1유형(일반상해)

(1) 다수의견(8인) ⇨ 감경영역 상한 수정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상해	2월-1년10월	4월-1년6월	6월-2년

- 양형기준 준수율이 높고(98.7%), 법정형 변경이 없으며, 기존 양형 기준에 특별한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음

단위: 명, %, 월

영역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영역 비율	
		1	2	3	4	5	6	7	8	9	10	12	14	15	16	18	20	24	30	36	60				84
감경	수	2	42	112	1,354	62	2,205	0	621	4	243	178	7	0	0	25	1	9	0	2	0	0	4,867	6.12	36.8
	비율	0.0	0.9	2.3	27.8	1.3	45.3	0.0	12.8	0.1	5.0	3.7	0.1	0.0	0.0	0.5	0.0	0.2	0.0	0.0	0.0	0.0	100.0		
기본	수	0	5	31	1,050	110	2,669	5	1,058	3	389	320	12	0	4	71	0	13	3	2	0	0	5,745	6.81	43.5
	비율	0.0	0.1	0.5	18.3	1.9	46.5	0.1	18.4	0.1	6.8	5.6	0.2	0.0	0.1	1.2	0.0	0.2	0.1	0.0	0.0	0.0	100.0		
가중	수	0	6	5	92	6	1,042	4	637	4	346	264	18	2	8	110	1	49	4	8	1	1	2,608	8.67	19.7
	비율	0.0	0.2	0.2	3.5	0.2	40.0	0.2	24.4	0.2	13.3	10.1	0.7	0.1	0.3	4.2	0.0	1.9	0.2	0.3	0.0	0.0	100.0		
전체	수	2	53	148	2,496	178	5,916	9	2,316	11	978	762	37	2	12	206	2	71	7	12	1	1	13,220	6.92	100.0
	비율	0.0	0.4	1.1	18.9	1.3	44.8	0.1	17.5	0.1	7.4	5.8	0.3	0.0	0.1	1.6	0.0	0.5	0.1	0.1	0.0	0.0	100.0		

- 위헌 결정 이후 상습상해의 전체적인 선고형량이 낮아져, 일반상해의 권고형량 범위에 대부분 포섭됨
 - 상습상해는 제1유형에 포함되어 있던 공동상해와 법정형이 동일하므로 상습상해의 법정형을 특별히 반영할 필요는 없음
 - 2015. 9. 23.(폭력행위처벌법 위헌 결정) 이전 선고

사건명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1	2	3	4	5	6	7	8	9	10	12	14	15	16	18	20	21	22	24	26			27	28	30	36	42	48
폭처법 (상습 상해)	수	0	0	0	0	0	0	0	0	0	2	3	0	0	0	72	0	0	0	27	0	0	0	1	4	1	1	111	20.4 0
	비율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8	27	0.0	0.0	0.0	64.9	0.0	0.0	0.0	24.3	0.0	0.0	0.0	0.9	3.6	0.9	0.9	

- 2015. 9. 24. 이후 선고

사건명	형량(월)																				전체	평균형량	
	2	3	4	5	6	7	8	9	10	12	14	15	16	18	20	21	22	24	28	30			
상습상해	수	0	0	0	0	0	0	3	0	4	7	1	0	0	4	0	0	0	4	0	1 ¹⁾	24	15.00
비율		0.0	0.0	0.0	0.0	0.0	0.0	12.5	0.0	16.7	29.2	4.2	0.0	0.0	16.7	0.0	0.0	0.0	16.7	0.0	4.2	100.0	

- 개별 범죄유형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실제 선고형량을 참조하여 적절한 형량을 제시한다는 실질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점으로의 중첩을 허용할 것인지 등 형식적인 면에 치중하여서는 안 됨 ⇨ 형량범위 설정 과정에서 개별유형에 따라 가장 적절한 형량범위를 제시할 경우에는 감경영역과 가중영역의 형량범위가 중첩될 수 있음
- 양형기준의 지침적 기능과 예측가능성은 '권고 형량범위'에 있는 것이지 '권고 영역'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최종적인 결과물은 '권고 형량범위'임. 즉, 당해 사건이 '징역 ○년부터 ○년' 사이에서 선고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지 '○○영역'에서 선고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님. 제공하는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이 2영역에 걸쳐있거나 3영역에 걸쳐있다고 하여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님 ⇨ 일반상해 유형에서 '10월 - 3년'은 예측가능성이 있고, '6월 - 2년'은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볼 근거 없음
- 기본영역의 하한을 6월로 상향하면 기존 선고사건 중 20.2%, 가중영역의 하한을 10월로 상향하면 기존 선고사건의 64.8%가 각 양형기준을 이탈하게 되어 기존 실무례를 적절히 반영하기 어려움
- 특수상해, 보복목적 상해의 가중영역 상한이 3년인 점을 고려하면, 일반상해 가중영역 상한을 2년→3년으로 상향하는 것은 일반상해와 특수상해, 보복목적 상해의 법정형 및 죄질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1) 상습상해죄와 상습특수협박죄가 경합된 사건, 기존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2년~4년9월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선고한 사건임

결과가 됨

- 상해범죄의 선고형량이 낮아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반성적 고려, 정책적 필요성이 없는 한 기본영역 및 가중영역의 하한을 상향할 필요 없음
- 다만 감경영역의 권고 형량범위 폭이 다소 넓고, 특수상해의 감경영역 상한이 1년인 점을 고려하여, 상한 1년을 10월로 하향

(2) 소수의견(2인) ⇨ 감경영역 상한, 기본영역 하한, 가중영역 상·하한 수정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상해	2월-1년10월	4월6월-1년6월	6월10월-2년3년

- 현행 양형기준은 개별사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기한다는 명분으로 감경·기본·가중영역에서 형량범위의 중첩을 허용하고 있음
⇨ 가중영역의 하한이 감경영역의 상한보다 낮은 경우 예측가능성 내지 규범력 확보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함
- 징역 1년이 선고되어도 이것이 어느 영역에서 판단된 것인지 알 수 없음
- 중첩으로 인하여 각 구간의 차이가 적어 변별력이 저하됨
- 1유형의 감경영역과 가중영역의 평균형량 차이가 2.8월에 불과함(제2유형 25.2월, 3유형 44.3월, 4유형 25.9월)
- 일반상해 가중영역 하한이 감경영역 상한에 미달하고 있음 ⇨ 중첩 해소가 필요하므로, 감경영역 상한을 10월로 하향, 가중영역 하한을 10월로 상향
- 기본영역 하한은 상해와 법정형이 유사한 공용물무효, 일반장물, 강요, 일반절도의 기본영역 하한을 참조하여 4월에서 6월로 상향
- 상습상해의 법정형 및 형량범위에 포섭하기 위해 가중영역의 상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상향

나. 제2유형(중상해)[의견일치] ⇨ 가중영역 상한 수정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중상해	6월-1년6월	1년-2년	1년6월-3년4년

- 양형기준 준수율이 높음(91.1%), 다만, 양형기준 설정 후에 가중영역 상한인 징역 3년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높아진 점, 상습중상해, 상습중존속상해의 법정형을 반영할 필요 있음

다.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견일치] ⇨ 현행 유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2년-4년	3년-5년	4년-7년

- 양형기준 준수율이 높고(91%), 권고형량 범위 내에 대부분 포섭됨
- 형량분포

단위: 명, %, 월

영역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영역 비율	
		10	12	18	24	30	32	36	42	48	54	58	60	72	84	96	108	120				144
감경	수	1	0	9	31	12	1	34	1	10	0	0	1	0	0	0	0	0	0	100	31.14	29.5
	비율	1.0	0.0	9.0	31.0	12.0	1.0	34.0	1.0	10.0	0.0	0.0	1.0	0.0	0.0	0.0	0.0	0.0	0.0	100.0		
기본	수	0	1	1	5	4	0	34	9	46	5	0	25	1	3	0	0	1	0	135	46.62	39.8
	비율	0.0	0.7	0.7	3.7	3.0	0.0	25.2	6.7	34.1	3.7	0.0	18.5	0.7	2.2	0.0	0.0	0.7	0.0	100.0		
가중	수	0	0	0	0	0	0	3	0	19	3	1	22	13	25	2	3	11	2	104	74.23	30.7
	비율	0.0	0.0	0.0	0.0	0.0	0.0	2.9	0.0	18.3	2.9	1.0	21.2	12.5	24.0	1.9	2.9	10.6	1.9	100.0		
전체	수	1	1	10	36	16	1	71	10	75	8	1	48	14	28	2	3	12	2	339	50.53	100.0
	비율	0.3	0.3	2.9	10.6	4.7	0.3	20.9	2.9	22.1	2.4	0.3	14.2	4.1	8.3	0.6	0.9	3.5	0.6	100.0		

라.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의견일치] ⇨ 현행 유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4	보복목적 상해	6월-1년6월	1년-2년	1년6월-3년

- 양형기준 준수율이 높고(96.5%), 권고형량 범위 내에 대부분 포섭됨

○ 형량분포

단위: 명, %, 월

영역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영역 비율
		6	8	10	12	18	24	30	36			
감경	수	12	10	9	20	3	0	0	0	54	9.93	61.4
	비율	22.2	18.5	16.7	37.0	5.6	0.0	0.0	0.0	100.0		
기본	수	0	1	1	11	7	3	1	1	25	16.56	28.4
	비율	0.0	4.0	4.0	44.0	28.0	12.0	4.0	4.0	100.0		
가중	수	0	0	1	0	3	3	0	2	9	23.11	10.2
	비율	0.0	0.0	11.1	0.0	33.3	33.3	0.0	22.2	100.0		
전체	수	12	11	11	31	13	6	1	3	88	13.16	100.0
	비율	13.6	12.5	12.5	35.2	14.8	6.8	1.1	3.4	100.0		

마. 형량범위(안)

(1) 다수의견(8인)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상해	2월-1년10월	4월-1년6월	6월-2년
2	중상해	6월-1년6월	1년-2년	1년6월-3년4년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2년-4년	3년-5년	4년-7년
4	보복목적 상해	6월-1년6월	1년-2년	1년6월-3년

(2) 소수의견(2인)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상해	2월-1년10월	4월6월-1년6월	6월10월-2년3년
2	중상해	6월-1년6월	1년-2년	1년6월-3년4년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2년-4년	3년-5년	4년-7년
4	보복목적 상해	6월-1년6월	1년-2년	1년6월-3년

2. 대유형2[특수상해 · 누범상해]

가. 제1유형(특수상해)[의견일치]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특수상해	4월-1년	6월-2년	1년-3년

○ 징역 3년 이상을 기준으로 설정된 기존의 양형기준에 대하여, 법

정형이 대폭 하향된 법률개정 내용 반영

- 법률 개정 후 특수상해 평균형량 및 형량분포가 상해, 공동상해의 평균형량 및 분포보다 2~3개월 상향되어 있는 실무례를 반영하여, 일반상해의 양형기준보다 다소 상향할 필요 있음
- 형량분포

단위: 명, %, 월

구분	세부죄명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3	4	5	6	7	8	9	10	12	14	15	16	18	24	30	36			42	48
상해 범죄	특수상해	수	0	0	3	0	310	1	267	6	85	239	9	1	2	41	14	6	2	2	0	988	9.48
		비율	0.0	0.0	0.3	0.0	31.4	0.1	27.0	0.6	8.6	24.2	0.9	0.1	0.2	4.1	1.4	0.6	0.2	0.2	0.0	100	
	특수존속 상해	수	0	0	0	0	0	0	2	0	1	3	0	0	0	1	1	0	0	0	0	8	13.00
		비율	0.0	0.0	0.0	0.0	0.0	0.0	25.0	0.0	12.5	37.5	0.0	0.0	0.0	12.5	12.5	0.0	0.0	0.0	0.0	100	

나. 재2유형(특수중상해·누범상해) [의견일치]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특수중상해 · 누범상해	10월-2년	1년6월-3년6월	2년-5년

- 중상해의 기본영역의 하한이 1년이므로 특수중상해의 하한을 그보다 높게 설정할 필요 있음
- 동일한 유형에 포함된 누범상해의 평균형량(18.28월) 및 형량분포가 특수중상해의 평균형량(29.14월) 및 형량분포보다 하향되어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를 정할 때 이를 고려할 필요 있음
- 형량분포

- 특수중상해

단위: 명, %, 월

세부죄명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3	4	5	6	7	8	9	10	12	14	15	16	18	24	30	36			42	48
특수중상해	수	0	0	0	0	0	0	0	0	0	0	0	0	0	2	1	2	1	0	1	7	29.14
	비율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28.6	14.3	28.6	14.3	0.0	14.3	100	

- 누범상해

단위: 명, %, 월

세부죄명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3	4	5	6	7	8	9	10	12	14	15	16	18	24	30	36			42	48
누범상해	수	0	0	0	0	0	0	0	0	0	3	1	0	0	0	2	1	0	0	0	7	18.28
	비율	0.0	0.0	0.0	0.0	0.0	0.0	0.0	0.0	0.0	42.8	14.2	0.0	0.0	0.0	28.5	14.2	0.0	0.0	0.0	100	

다. 제3유형(누범특수상해)[의견일치]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누범특수상해	1년6월-3년	2년-4년	3년-6년

- 징역 5년 이상을 기준으로 설정된 기존의 양형기준에 대하여, 법정형이 하향된 법률개정 내용을 반영할 필요 있음
- 누범특수상해 유형과 법정형 및 죄질이 유사한 특수공무방해치상, 폭행치사 권고 형량범위 참고
- 형량분포

단위: 명, %

사건명		형량(월)																		
		1	2	3	4	5	6	7	8	9	10	12	14	15	16	18	20	21	22	24
폭처법(상습집단 흥기등상해)	수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0	0	0	1
	비율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3.3	0.0	0.0	0.0	6.7

사건명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6	27	28	30	32	36	42	48	54	58	60	72	84	96	108	120	144		
폭처법(상습 집단-흥기등 상해)	수	0	0	0	3	0	4	1	1	0	0	1	2	0	0	0	0	0	0	15
	비율	0.0	0.0	0.0	20.0	0.0	26.7	6.7	6.7	0.0	0.0	6.7	13.3	0.0	0.0	0.0	0.0	0.0	0.0	100.0

라. 형량범위(안)[의견일치]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특수상해	4월-1년	6월-2년	1년-3년
2	특수중상해 · 누범상해	10월-2년	1년6월-3년6월	2년-5년
3	누범특수상해	1년6월-3년	2년-4년	3년-6년

IV. 폭행범죄 양형기준 수정안[형량범위] 논의 결과

1. 제1유형(일반폭행)

가. 다수의견(6인) ⇨ 현행 유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폭행	-8월	2월-10월	4월-1년

- 양형기준 준수율이 높고(99.7%), 법정형 변경이 없으며, 기존 양형 기준에 특별한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음

단위: 명, %, 월

영역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영역 비율
		2	3	4	5	6	8	10	12	14	16	18	24	30	36			
감경	수	8	11	120	4	103	26	8	5	1	0	1	0	0	0	287	5.39	16.8
	비율	2.8	3.8	41.8	1.4	35.9	9.1	2.8	1.7	0.3	0.0	0.3	0.0	0.0	0.0	100.0		
기본	수	16	32	481	23	429	98	26	33	2	0	7	1	1	0	1,149	5.56	67.2
	비율	1.4	2.8	41.9	2.0	37.3	8.5	2.3	2.9	0.2	0.0	0.6	0.1	0.1	0.0	100.0		
가중	수	1	1	67	3	130	41	11	17	0	1	2	0	0	1	275	6.54	16.1
	비율	0.4	0.4	24.4	1.1	47.3	14.9	4.0	6.2	0.0	0.4	0.7	0.0	0.0	0.4	100.0		
전체	수	25	44	668	30	662	165	45	55	3	1	10	1	1	1	1,711	5.69	100.0
	비율	1.5	2.6	39.0	1.8	38.7	9.6	2.6	3.2	0.2	0.1	0.6	0.1	0.1	0.1	100.0		

- 위헌 결정 이후 상습폭행의 전체적인 선고형량이 낮아져, 일반폭행의 권고형량 범위에 대부분 포섭됨
 - 상습폭행은 제1유형에 포함되어 있던 공동폭행과 법정형이 동일하므로 상습폭행의 법정형을 특별히 반영할 필요는 없음
 - 2015. 9. 23.(폭력행위처벌법 위헌 결정) 이전 선고

대표사건명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3	4	5	6	7	8	9	10	12	14	15	16	18	20	21	22			24
폭처법(상습폭행)	수	0	0	0	0	36	0	30	0	6	15	0	1	0	1	0	0	0	2	91	8.54
	비율	0.0	0.0	0.0	0.0	39.6	0.0	33.0	0.0	6.6	16.5	0.0	1.1	0.0	1.1	0.0	0.0	0.0	2.2	100.0	

- 2015. 9. 24. 이후 선고

대표사건명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3	4	5	6	7	8	9	10	12	14	15	16	18	20	21	22			24
상습폭행	수	0	0	9	0	11	0	4	0	2	0	0	0	0	2 ²⁾	0	0	0	0	28	6.79
	비율	0.0	0.0	32.1	0.0	39.3	0.0	14.3	0.0	7.1	0.0	0.0	0.0	0.0	7.1	0.0	0.0	0.0	0.0	100.0	

- 기본영역의 하한을 4월로 상향하면 기존 선고사건 중 4.2%, 가중영역의 하한을 8월로 상향하면 기존 선고사건의 72.8%가 각 양형 기준을 이탈하게 되어 기존 실무례를 적절히 반영하기 어려움
- 폭행범죄의 선고형량이 낮아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반성적 고려, 정책적 필요성이 없는 한 중첩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2) 두 사건 모두 특수상해죄와, 상습폭행죄가 경합된 사건임

형식적인 면에 치중하여 기본영역 하한 및 가중영역의 하한을 상향할 필요 없음

나. 소수의견(2인) ⇨ 기본영역 하한, 가중영역 상·하한 수정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폭행	-8월	2월4월-10월	4월-1년 8월-1년6월

- 영역 간 형량범위 중첩 문제 해소 필요
 - 영역 구분의 의미 및 기준의 규범력 제고를 위하여 적어도 감경영역의 상한이 가중영역의 하한보다 높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감경영역과 기본영역의 중첩구간을 줄일 필요 있음
- 상습폭행의 법정형 및 형량범위를 포섭하기 위해 가중영역의 상한을 1년에서 1년6월로 상향

2. 제2유형(폭행치상)

가. 다수의견(5인) ⇨ 현행 유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폭행치상	2월-1년6월	4월-2년	6월-3년

- 양형기준 준수율이 높고(99.7%), 법정형 변경이 없으며, 기존 양형기준에 특별한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음
- 특수폭행치상의 선고형도 기존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이로 인한 형량범위를 별도로 수정할 필요 없음
 - 폭행치상

단위: 명, %, 월

영역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영역 비율
		2	3	4	5	6	8	10	12	14	18	24	30	36			
감경	수	2	2	22	3	27	11	6	8	0	1	0	0	0	82	6.55	28.6
	비율	2.4	2.4	26.8	3.7	32.9	13.4	7.3	9.8	0.0	1.2	0.0	0.0	0.0	100.0		
기본	수	0	0	28	2	57	22	5	12	1	2	1	0	0	130	6.98	45.3
	비율	0.0	0.0	21.5	1.5	43.8	16.9	3.8	9.2	0.8	1.5	0.8	0.0	0.0	100.0		
가중	수	0	0	3	0	32	21	6	6	0	4	0	1	2	75	9.04	26.1
	비율	0.0	0.0	4.0	0.0	42.7	28.0	8.0	8.0	0.0	5.3	0.0	1.3	2.7	100.0		
전체	수	2	2	53	5	116	54	17	26	1	7	1	1	2	287	7.40	100.0
	비율	0.7	0.7	18.5	1.7	40.4	18.8	5.9	9.1	0.3	2.4	0.3	0.3	0.7	100.0		

- 특수폭행치상

단위: 명, %, 월

구분	세부죄명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3	4	5	6	7	8	9	10	12	14	15	16	18	24	30	36	42		
폭행 범죄	특수폭행 치상	수	0	0	0	0	7	0	2	0	2	4	0	0	0	0	0	0	0	0	15	8.40
		비율	0.0	0.0	0.0	0.0	46.7	0.0	13.3	0.0	13.3	26.7	0.0	0.0	0.0	0.0	0.0	0.0	0.0	0.0	100	

- 기본영역의 하한을 6월로 상향하면 기존 선고사건 중 23%, 가중영역의 하한을 1년으로 상향하면 기존 선고사건의 78.7%가 각 양형기준을 이탈하게 되어 기존 실무례를 적절히 반영하기 어려움
- 폭행치상은 일반상해와 법정형이 동일하기는 하나, 폭행치상 유형에는 중상해에 이른 경우, 특수폭행으로 상해에 이른 경우도 모두 포섭해야 하므로, 최초 양형기준 설정 당시 이를 반영하여 권고형량범위가 일반상해 유형보다 가중되어 있음

나. 소수의견(2인)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폭행치상	2월-1년6월1년	4월6월-2년	6월1년-3년

- 영역 간 형량범위 중첩 문제 해소 필요
 - 영역 구분의 의미 및 기준의 규범력 제고를 위하여 적어도 감경영역의 상한이 가중영역의 하한보다 높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감경영역과 기본영역의 중첩구간을 줄일 필요 있음

다. 소수의견(1인) ⇨ 감경영역 상한 수정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폭행치상	2월-1년6월1년	4월-2년	6월-3년

- 감경영역의 형량범위 폭이 다소 넓으므로 양형기준의 지침적 기능에 반할 우려가 있음
- 감경영역 상한을 1년으로 하향하더라도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사건이 많지 않음

3.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견일치] ⇨ 현행 유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년6월-3년	2년-4년	3년-5년

- 양형기준 준수율이 높고(94%), 권고형량 범위 내에 대부분 포섭됨
- 형량분포

단위: 명, %, 월

영역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영역 비율	
		10	12	18	24	30	32	36	42	48	54	58	60	72	84	96	108	120				144
감경	수	1	0	9	31	12	1	34	1	10	0	0	1	0	0	0	0	0	100	31.14	29.5	
	비율	1.0	0.0	9.0	31.0	12.0	1.0	34.0	1.0	10.0	0.0	0.0	1.0	0.0	0.0	0.0	0.0	0.0	100.0			
기본	수	0	1	1	5	4	0	34	9	46	5	0	25	1	3	0	0	1	0	135	46.62	39.8
	비율	0.0	0.7	0.7	3.7	3.0	0.0	25.2	6.7	34.1	3.7	0.0	18.5	0.7	2.2	0.0	0.0	0.7	0.0	100.0		
가중	수	0	0	0	0	0	0	3	0	19	3	1	22	13	25	2	3	11	2	104	74.23	30.7
	비율	0.0	0.0	0.0	0.0	0.0	0.0	2.9	0.0	18.3	2.9	1.0	21.2	12.5	24.0	1.9	2.9	10.6	1.9	100.0		
전체	수	1	1	10	36	16	1	71	10	75	8	1	48	14	28	2	3	12	2	339	50.53	100.0
	비율	0.3	0.3	2.9	10.6	4.7	0.3	20.9	2.9	22.1	2.4	0.3	14.2	4.1	8.3	0.6	0.9	3.5	0.6	100.0		

4.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의견일치] ⇨ 현행 유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4	운전자 폭행치상	10월-2년	1년6월-3년	2년-4년

- 양형기준 준수율이 높고(99.5%), 권고형량 범위 내에 대부분 포섭됨
- 형량분포

단위: 명, %, 월

영역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영역 비율
		4	6	10	12	18	24	30	36			
감경	수	2	1	14	13	679	43	0	0	752	18.04	91.6
	비율	0.3	0.1	1.9	1.7	90.3	5.7	0.0	0.0	100.0		
기본	수	0	0	0	2	52	9	1	1	65	19.11	7.9
	비율	0.0	0.0	0.0	3.1	80.0	13.8	1.5	1.5	100.0		
가중	수	0	0	0	0	0	4	0	0	4	24.00	0.5
	비율	0.0	0.0	0.0	0.0	0.0	100.0	0.0	0.0	100.0		
전체	수	2	1	14	15	731	56	1	1	821	18.15	100.0
	비율	0.2	0.1	1.7	1.8	89.0	6.8	0.1	0.1	100.0		

5. 제5유형(운전자 폭행치사)[의견일치] ⇨ 현행 유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5	운전자 폭행치사	2년-4년	3년-5년	4년-7년

○ 법정형 변경 없고 실제 선고된 사례가 없으므로, 수정의 필요성 없음

6.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가. 다수의견(5인)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6	누범·특수폭행	4월2월-1년2월	6월4월-1년10월	8월6월-2년4월

○ 징역 1년 이상을 기준으로 설정된 양형기준에 대하여, 법정형이 하향된 법률 개정 내용 반영

○ 법률 개정 후 특수폭행 평균형량 및 형량분포가 폭력행위처벌법상 평균형량 및 형량분포보다 낮은 점, 폭행, 공동폭행의 평균형량 및 분포도와 유사하거나 조금 상향되어 있는 실무례를 반영하여, 일반폭행의 양형기준보다 다소 상향할 필요 있음

- 폭행 : 평균형량(5.29월), 4월(47.4%), 6월(34.1%), 8월(6.1%)

- 공동폭행 : 평균형량(6.49월), 6월(40.9%), 4월(28.4%), 8월(14.2%)

- 특수폭행 : 평균형량(6.48월), 6월(54.2%), 8월(17.4%), 4월(16.1%)

○ 가중영역의 하한을 10월로 상향할 경우, 법률 개정 전의 기존 선고사건도 28.9%가 양형기준을 이탈하게 되어 실무례를 적절히 반영하기 어려움

○ 기존 유형에 따른 형량분포

- 평균형량이 징역 8월이고 징역 6월의 비중(47%)이 가장 높았음

단위: 명, %, 월

영역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영역 비율
		3	4	5	6	7	8	9	10	12	14	15	16	18	24	30	36			
감경	수	6	104	8	1,130	0	459	0	176	244	4	1	0	22	4	0	0	2,158	7.50	63.5
	비율	0.3	4.8	0.4	52.4	0.0	21.3	0.0	8.2	11.3	0.2	0.0	0.0	1.0	0.2	0.0	0.0	100.0		
기본	수	0	13	2	466	2	321	1	99	214	6	2	2	27	10	0	0	1,165	8.48	34.3

단위: 명, %, 월

영역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영역 비율
		3	4	5	6	7	8	9	10	12	14	15	16	18	24	30	36			
	비율	0.0	1.1	0.2	40.0	0.2	27.6	0.1	8.5	18.4	0.5	0.2	0.2	2.3	0.9	0.0	0.0	100.0		
가중	수	0	0	0	3	0	19	0	7	17	0	0	0	11	14	3	2	76	15.00	2.2
	비율	0.0	0.0	0.0	3.9	0.0	25.0	0.0	9.2	22.4	0.0	0.0	0.0	14.5	18.4	3.9	2.6	100.0		
전체	수	6	117	10	1,599	2	799	1	282	475	10	3	2	60	28	3	2	3,399	8.00	100.0
	비율	0.2	3.4	0.3	47.0	0.1	23.5	0.0	8.3	14.0	0.3	0.1	0.1	1.8	0.8	0.1	0.1	100.0		

나. 소수의견(2인)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6	누범·특수폭행	4월-1년2월 2월-10월	6월-1년10월 4월-1년6월	8월-2년4월 10월-2년

- 영역 간 형량범위 중첩 문제 해소 필요
 - 영역 구분의 의미 및 기준의 규범력 제고를 위하여 적어도 감경영역의 상한이 가중영역의 하한보다 높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감경영역과 기본영역, 기본영역과 가중영역의 중첩구간을 줄일 필요 있음
- 법정형 변경을 반영하여 감경영역과 기본영역의 상한을 하향
- 특수폭행과 법정형이 유사한 유형(공무집행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증, 사문서위조·변조 등), 누범폭행과 법정형이 유사한 유형(공용물무효, 특수도주,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의 권고 형량범위 참조

다. 소수의견(1인)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6	누범·특수폭행	4월-1년2월 2월-1년	6월4월-1년10월	8월6월-2년4월

- 기본영역, 가중영역 형량범위는 다수의견과 동일함
- 감경영역의 형량범위 폭이 다소 넓으므로 양형기준의 지침적 기능에 반할 우려가 있음

- 감경영역 상한을 1년으로 하향하더라도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사건이 많지 않음

7.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가. 다수의견(6인) ⇨ 현행 유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7	보복목적 폭행	4월-1년4월	10월-2년	1년-2년6월

- 양형기준 준수율이 높고(97.5%), 법정형 변경이 없으며, 권고형량 범위 내에 대부분 포섭됨
- 기존 양형기준에 특별한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음
- 가중영역의 하한을 1년2월로 상향하면 기존 선고사건 중 36.4%가 양형기준을 이탈하게 되어 기존 실무례를 적절히 반영하기 어려움
- 형량분포

단위: 명, %, 월

영역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영역 비율
		4	6	8	10	12	18	24			
감경	수	1	15	18	12	16	1	0	63	9.02	64.3
	비율	1.6	23.8	28.6	19.0	25.4	1.6	0.0	100.0		
기본	수	0	2	2	3	15	2	0	24	11.42	24.5
	비율	0.0	8.3	8.3	12.5	62.5	8.3	0.0	100.0		
가중	수	0	0	1	0	4	4	2	11	16.00	11.2
	비율	0.0	0.0	9.1	0.0	36.4	36.4	18.2	100.0		
전체	수	1	17	21	15	35	7	2	98	10.39	100.0
	비율	1.0	17.3	21.4	15.3	35.7	7.1	2.0	100.0		

나. 소수의견(2인) ⇨ 감경영역 상한, 가중영역 하한 수정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7	보복목적 폭행	4월-1년4월 1년2월	10월-2년	1년1년2월-2년6월

- 영역 간 형량범위 중첩 문제 해소 필요
 - 영역 구분의 의미 및 기준의 규범력 제고를 위하여 적어도 감경영역의 상한이 가중영역의 하한보다 높지 않도록 하여야 함

8. 형량범위(안)

가. 다수의견(5인)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폭행	-8월	2월-10월	4월-1년
2	폭행치상	2월-1년6월	4월-2년	6월-3년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년6월-3년	2년-4년	3년-5년
4	운전자 폭행치상	10월-2년	1년6월-3년	2년-4년
5	운전자 폭행치사	2년-4년	3년-5년	4년-7년
6	누범·특수폭행	4월2월-1년2월	6월4월-1년10월	8월6월-2년4월
7	보복목적 폭행	4월-1년4월	10월-2년	1년-2년6월

나. 소수의견(2인)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폭행	-8월	2월4월-10월	4월-1년 8월-1년6월
2	폭행치상	2월-1년6월1년	4월6월-2년	6월1년-3년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년6월-3년	2년-4년	3년-5년
4	운전자 폭행치상	10월-2년	1년6월-3년	2년-4년
5	운전자 폭행치사	2년-4년	3년-5년	4년-7년
6	누범·특수폭행	4월-1년2월 2월-10월	6월-1년10월 4월-1년6월	8월-2년4월 10월-2년
7	보복목적 폭행	4월-1년4월 1년2월	10월-2년	1년1년2월- 2년6월

다. 소수의견(1인)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폭행	-8월	2월-10월	4월-1년
2	폭행치상	2월-1년6월1년	4월-2년	6월-3년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년6월-3년	2년-4년	3년-5년
4	운전자 폭행치상	10월-2년	1년6월-3년	2년-4년
5	운전자 폭행치사	2년-4년	3년-5년	4년-7년
6	누범·특수폭행	4월-1년2월 2월-1년	6월4월-1년10월	8월6월-2년4월
7	보복목적 폭행	4월-1년4월	10월-2년	1년-2년6월

V. 협박범죄 양형기준 수정안[형량범위] 논의 결과

1. 제1유형(일반협박)

가. 다수의견(6인) ⇨ 현행 유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협박	-8월	2월-1년	4월-1년6월

- 양형기준 준수율이 높고(99.8%), 법정형 변경이 없으며, 기존 양형 기준에 특별한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음

단위: 명, %, 월

영역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영역 비율
		2	3	4	5	6	8	10	12	18	30			
감경	수	0	0	4	1	9	6	0	1	0	0	21	6.43	7.6
	비율	0.0	0.0	19.0	4.8	42.9	28.6	0.0	4.8	0.0	0.0	100.0		
기본	수	1	1	44	4	83	34	16	13	2	0	198	6.68	71.2
	비율	0.5	0.5	22.2	2.0	41.9	17.2	8.1	6.6	1.0	0.0	100.0		
가중	수	1	0	8	2	23	10	4	7	3	1	59	7.97	21.2
	비율	1.7	0.0	13.6	3.4	39.0	16.9	6.8	11.9	5.1	1.7	100.0		
전체	수	2	1	56	7	115	50	20	21	5	1	278	6.94	100.0
	비율	0.7	0.4	20.1	2.5	41.4	18.0	7.2	7.6	1.8	0.4	100.0		

- 사건 수가 많지 않아 통계로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긴 하나, 위헌 결정 이후 상습협박의 전체적인 선고형량이 낮아져, 상습협박죄의 형량이 일반협박의 권고형량 범위에 대부분 포섭됨
 - 상습협박은 제1유형에 포함되어 있던 공동협박과 법정형이 동일하므로 상습협박의 법정형을 특별히 반영할 필요는 없음
 - 2015. 9. 23.(폭력행위처벌법 위헌 결정) 이전 선고

대표사건명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1	2	3	4	5	6	7	8	9	10	12	14	15	16	18	20	21	22			24
폭처법(상습협박)	수	0	0	0	0	0	2	0	0	0	0	1	0	0	1	0	0	0	0	0	4	10.00
	비율	0.0	0.0	0.0	0.0	0.0	50.0	0.0	0.0	0.0	0.0	25.0	0.0	0.0	25.0	0.0	0.0	0.0	0.0	0.0	100.0	

- 2015. 9. 24. 이후 선고

대표사건명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3	4	5	6	7	8	9	10	12	14	15	16	18	20	21	22	24			
상습협박	수	0	0	0	0	0	0	2	0	1	0	0	0	0	0	0	0	0	0	0	3	8.67
	비율	0.0	0.0	0.0	0.0	0.0	0.0	66.7	0.0	33.3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 가중영역의 하한을 8월로 상향하면 기존 선고사건 중 56%가 이탈하게 되어 기존 실무례를 적절히 반영하기 어려움
- 협박범죄의 선고형량이 낮아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반성적 고려, 정책적 필요성이 없는 한 중첩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형식적인 면에 치중하여 가중영역의 하한을 상향할 필요 없음

나. 소수의견(2인) ⇨ 가중영역 하한 수정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협박	-8월	2월-1년	4월-1년6월 8월-2년

- 영역 간 형량범위 중첩 문제 해소 필요
 - 영역 구분의 의미 및 기준의 규범력 제고를 위하여 적어도 감경영역의 상한이 가중영역의 하한보다 높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상습협박의 법정형 및 형량범위를 포섭하기 위해 가중영역의 상한을 1년6월에서 2년으로 상향

2. 제2유형(운전자 협박치상), 제3유형(운전자 협박치사)[의견일치]

⇨ 현행 유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운전자 협박치상	10월-2년	1년6월-3년	2년-4월
3	운전자 협박치사	2년-4년	3년-5년	4년-7년

- 법정형 변경 없고 실제 선고된 사례가 없으므로, 수정의 필요성 없음

3.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가. 다수의견(6인)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4	누범·특수협박	4월2월-1년	6월4월-1년6월	8월6월-2년

- 징역 1년 이상을 기준으로 설정된 양형기준에 대하여, 법정형이

하향된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할 필요 있음

- 법률 개정 후 특수협박 평균형량 및 형량분포가 협박, 공동협박의 평균형량 및 형량분포와 유사하거나 낮아진 실무례를 반영하여 일반협박의 양형기준을 참조할 필요 있음
 - 협박 : 평균형량(6.85월), 6월(41.9%), 4월(23.2%), 8월(14.1%)
 - 공동협박 : 평균형량(6.97%), 6월(40.6%), 8월(26.1%), 4월(14.5%)
 - 특수협박 : 평균형량(6.68월), 6월(48.4%), 8월(21.3%), 4월(18.1%)
- 가중영역의 상한을 10월로 상향할 경우, 법률 개정 전의 기존 선고 사건도 30.2%가 이탈하게 되어 실무례를 적절히 반영하기 어려움
- 기존 유형에 따른 형량분포
 - 평균형량이 7.91월이고, 징역 6월의 비중(44.6%)이 가장 높았음

단위: 명, %, 월

영역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영역 비율	
		2	3	4	5	6	7	8	9	10	12	14	16	18	21	24	30				36
감경	수	1	0	144	6	1,323	4	650	2	203	284	2	1	17	0	3	0	1	2,641	7.45	55.3
	비율	0.0	0.0	5.5	0.2	50.1	0.2	24.6	0.1	7.7	10.8	0.1	0.0	0.6	0.0	0.1	0.0	0.0	100.0		
기본	수	0	3	37	3	799	2	575	1	174	391	4	2	27	1	6	0	0	2,025	8.28	42.4
	비율	0.0	0.1	1.8	0.1	39.5	0.1	28.4	0.0	8.6	19.3	0.2	0.1	1.3	0.0	0.3	0.0	0.0	100.0		
가중	수	0	0	2	0	5	0	27	0	19	29	3	0	9	0	8	2	2	106	12.45	2.2
	비율	0.0	0.0	1.9	0.0	4.7	0.0	25.5	0.0	17.9	27.4	2.8	0.0	8.5	0.0	7.5	1.9	1.9	100.0		
전체	수	1	3	183	9	2,127	6	1,252	3	396	704	9	3	53	1	17	2	3	4,772	7.91	100.0
	비율	0.0	0.1	3.8	0.2	44.6	0.1	26.2	0.1	8.3	14.8	0.2	0.1	1.1	0.0	0.4	0.0	0.1	100.0		

나. 소수의견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4	누범·특수협박	4월-1년10월	6월-1년6월	8월10월-2년

- 영역 간 형량범위 중첩 문제 해소 필요
 - 영역 구분의 의미 및 기준의 규범력 제고를 위하여 적어도 감경영역의 상한이 가중영역의 하한보다 높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법정형이 일정 부분 하향한 것은 사실이나, 법정형이 유사한 다른 범죄(공용물무효, 특수도주,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에 비해 가벼운

편으로 가중영역 하한을 상향할 필요 있음

4.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가. 다수의견(6인) ⇨ 현행 유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5	보복목적 협박	4월-1년4월	10월-2년	1년-2년6월

- 양형기준 시행일 이후 선고사건의 형량분포를 보면, 양형기준 준수율이 높고(97.4%), 권고형량 범위 내에 대부분 포섭됨
- 기존 양형기준에 특별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되지 않음
- 가중영역의 하한을 1년2월로 상향하면, 기존 선고사건 중 26.9%가 양형기준을 이탈하게 되어 기존 실무례를 적절히 반영하기 어려움
- 형량분포

단위: 명, %, 월

영역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영역 비율
		6	8	10	12	16	18	21	24			
감경	수	19	18	14	16	1	3	0	0	71	9.30	42.5
	비율	26.8	25.4	19.7	22.5	1.4	4.2	0.0	0.0	100.0		
기본	수	1	4	20	32	0	10	0	3	70	12.49	41.9
	비율	1.4	5.7	28.6	45.7	0.0	14.3	0.0	4.3	100.0		
가중	수	0	1	2	7	0	11	1	4	26	16.42	15.6
	비율	0.0	3.8	7.7	26.9	0.0	42.3	3.8	15.4	100.0		
전체	수	20	23	36	55	1	24	1	7	167	11.74	100.0
	비율	12.0	13.8	21.6	32.9	0.6	14.4	0.6	4.2	100.0		

나. 소수의견(2인)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7	보복목적 폭행	4월-1년4월 1년2월	10월-2년	1년1년2월-2년6월

- 영역 간 형량범위 중첩 문제 해소 필요
 - 영역 구분의 의미 및 기준의 규범력 제고를 위하여 적어도 감경영역의 상한이 가중영역의 하한보다 높지 않도록 하여야 함

5. 형량범위(안)

가. 다수의견(6인)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협박	-8월	2월-1년	4월-1년6월
2	운전자 협박치상	10월-2년	1년6월-3년	2년-4월
3	운전자 협박치사	2년-4년	3년-5년	4년-7년
4	누범·특수협박	4월2월-1년	6월4월-1년6월	8월6월-2년
5	보복목적 협박	4월-1년4월	10월-2년	1년-2년6월

나. 소수의견(2인)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협박	-8월	2월-1년	4월-1년6월 8월-2년
2	운전자 협박치상	10월-2년	1년6월-3년	2년-4월
3	운전자 협박치사	2년-4년	3년-5년	4년-7년
4	누범·특수협박	4월-1년10월	6월-1년6월	8월10월-2년
5	보복목적 협박	4월-1년4월 1년2월	10월-2년	1년1년2월- 2년6월

VI. 폭력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양형인자] 논의 결과

1. 의견일치

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로 수정

- 폭력행위처벌법의 조문이 삭제되고, 형법이 적용됨에 따라 형법 조문의 표현을 사용함

나. 대유형1[일반적인 상해] 양형인자 중 (다만 2.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 상습상해 삭제 후 ‘(다만 2. 누범상해·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로 수정

- 상습상해 유형이 양형인자로 반영되었으므로 삭제함

다. 상습범인 경우 ⇨ 추가

○ 상습범을 특별가중인자로 처리하게 되어, 특별양형인자 중 행위자 /기타 인자에 추가

라. 대유형2[특수상해·누범상해] 양형인자 중 ‘중한 상해’ ⇨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로 수정

○ 대유형1(일반적인 상해) 양형인자표 중 ‘중한 상해’는 중복적용의 가능성 때문에 중상해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특수중상해의 경우에도 동일한 이유로 적용을 제외함

2. 의견불일치

가.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1) 다수의견(5인) ⇨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로 반영하여 상습범이 동종 누범인 경우 2개 인자 모두 적용

○ 상습범이면서 동종 누범인 경우에 중한 형으로 처벌할 필요 있음

○ 상습범과 동종 누범은 특별가중인자 중 행위자 인자이므로, 특별감경인자 중 행위인자가 1개 있는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으므로 상습범과 동종 누범이 모두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권고 형량범위 도출이 가능함

○ 절도범죄 양형기준 수정 당시에도 상습절도 유형이 양형인자로 반영되면서 상습범이 동종 누범과 병렬적으로 행위자 인자로 반영됨

(2) 소수의견(3인) ⇨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상습범인 경우 제외)’로 반영하여 상습범이 동종 누범인 경우 1개 인자만 적용

○ 폭행범죄, 협박범죄 기존 양형기준에서도 ‘동종 누범’ 양형인자를 상습유형에서 적용 제외함

○ 동종 누범은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을 이유로 가중요소로 삼은 것이므로, 상습범인 경우 중복 적용의 문제가 발생함

○ 누범은 행위 판단이고, 상습은 행위자 판단인데 같은 행위를 두

고 다른 측면에서 이중평가하여 가혹한 결과가 될 수 있음

나. 진지한 반성

(1) 다수의견(6인) ⇨ 현행 유지(정의규정 불요)

- 38개 범죄군 중 위증범죄, 무고범죄에만 정의규정이 존재함
- 진지한 반성에 대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라는 전부자백을 전제로 하는 정의규정은 적절하지 않음
- 자백사건, 부인사건에서 모두 적용가능한 양형요소임
 - 구성요건적 사실은 인정하지만, 심신미약, 심신상실, 정당방위, 과잉방위 등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를 주장하는 부인사건에서도 반성은 가능함. 즉, '진지한 반성'은 자백사건과 부인사건에서 모두 적용가능한 양형요소임
- 일부 부인 사건의 경우에도 고려할 수 있는 양형요소임
 - 공소사실에 대하여 일부 부인을 하더라도, 피고인이 일부 자백하는 사실에 대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 양형요소로 고려할 수 있음
-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행위의 잘못도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예: 경영 판단, 생리적 기능 훼손에 이르지 않은 상해라는 주장 등)에는 사실상 자백을 강요하게 되고, '진지한 반성' 인자가 적용될 수 없는 불합리함이 존재함
- 진지한 반성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더라도 재량에 따라 양형인자 적용여부에 대한 충분한 판단이 가능함

(2) 소수의견(2인) ⇨ 정의규정 필요('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진지한 반성이 일반감경인자로 참작되는 이유는, 잘못을 뉘우치고 범행을 인정하기 때문임. 따라서 범행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 '반성'으로 보기 어렵고 '진지한 반성'으로 보기는 더욱 어려움
- 실제 판결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진지한 반성'이라는 양형인자를 기재하는 경우가 존재하므로, 정의규정을 둘 필요 있음

- 양형기준은 '기준'을 정하는 것인 만큼 명칭이나 정의의 일관성에도 모호할 필요가 있음 ⇨ 위증, 무고범죄와 동일한 정의규정 필요
- 집행유예 기준에도 '진지한 반성'이 반영되고, 대부분의 판결에서 자주 인용되는 양형요소이므로, 잘못을 누우치고,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정의규정을 둘 필요 있음

다. 미필적 고의로 상해(폭행, 협박)행위를 저지른 경우

(1) 다수의견(5인) ⇨ 현행 유지(특별감경인자로 반영)

- 확정적 고의에 기한 범죄보다 미필적 고의에 기한 범죄를 감경하는 취지는 주관적 요소인 비난가능성의 정도 차이 때문임. 특별가중인자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 있다면 특별감경인자로서 확정적 고의를 이루지 못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함
- 살인범죄에서 미필적 고의를 특별감경인자로 인정한 것과 차별을 둘 필요 없음
-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중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를 규정하고 있는데, '고의'는 범행의 동기로 포섭되고 '상해의 정도'는 범행의 결과로 포섭될 수 있음. 이에 따라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에 대비하여 '미필적 고의', '중한 상해'에 대비하여 '경미한 상해'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미필적 고의는 생명·신체 침해행위와 같이 내심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범죄에 발생할 수 있는 양형요소로서 폭력범죄의 특성상 충분히 적용이 가능한 양형요소임
- 양형기준 시행 이후 '미필적 고의'가 적용된 사례가 존재함
 - 상해범죄(188건), 폭행범죄(21건), 협박범죄(5건)

(2) 소수의견(2인) ⇨ 삭제 또는 일반감경인자로 반영

- 살인범죄, 사기범죄와 달리, 최초 양형기준 설정 당시에 폭력범죄의 특별감경인자로 포섭할 이론적, 실무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채 종전 양형기준 중 사기범죄의 특별감경인자라는 이유로 양형

기준 초안에 기재되었음

- 미필적 고의 여부가 실제 형량의 차이를 인정할 정도로 영향력을 미치는 양형인자라는 실증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특별감경인자로 는 부적합함
- 범행 자체를 부인하거나 고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면서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는 사례가 있어, 개전의 정이 없음에도 오히려 형량을 감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 폭행, 협박범죄의 경우 단순 거동범의 성격이 강하여 미필적 고 의라는 개념을 상정하기 어려움

(3) 보류(1인)

VII. 향후 일정

- 폭력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양형인자] 검토
-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형량범위·양형인 자] 검토
- 일시 : 2017. 1. 5.(금) ~ 1. 6.(토)

[참고] '일반적인 상해' 유형 양형인자표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 경미한 상해(1, 4유형)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3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를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중한 상해(1, 4유형) ○ 존속인 피해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4유형 제외)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잔혹한 범행수법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습범인 경우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